「코로나19 입원 · 격리 치료비 지원 업무(제9-1판)」 신구조문대비표

쪽	현 행(제9판)	개 정(제9-1판)	개 정 사 유
1	**[일러두기]** ○ 이 지침은 코로나19 입원·격리 치료비 지원의 절차·방법 등을 안내할 목적으로 제정·운용하는 것으로서, 이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 지침」을 따름 ○ 이번 제9판은 "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 방안"(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, '22.6.24.)에 따라 △입원치료비는 지원 유지하고, △'22.7.11. 이후 격리 통지받은 확진환자에 대한 재택치료비는 지원 중단하기로 한 사항을 반영한 것임 ○ 관련 법령 및 지침 개정 등에 따라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	**[일러두기]** ○ 좌동 ○ 이번 제9-1판은 '23.6.1.부터 적용되는 위기단계 조정(1단계) 및 방역 조치 전환(격리권고)에 따라 코로나19 입원 · 격리 치료비 지원 변경 사항을 반영한 것임 ○ 좌동	○ 위기단계 조정 및 방역조치 전환에 따른 치료비 지원 변경에 따른 지침 개정임을 안내
	Ⅰ. 개요		
1	**3. 지원대상** ○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 지침」에 따라 신고되어, 보건소에서 입원·격리통지서를 받아 격리기간 동안 입원 또는 격리시설에 입소한 확진환자▶ ▶확진환자: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지침(지자체용)(제13판)」 사례 정의에 따름 ○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확인된 사람 ○ 코로나19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신속항원검사(전문가용) 또는 응급용 선별검사(긴급사용승인 제품)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어 의사가 진단한 사람('22.3.14~별도 안내 시*) * 근거: 의료기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결과 확진 인정 조치 재연장 안내(중앙방역대책본부-16892('22.5.11.)호	**3. 지원대상** ○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 지침」에 따라 신고되어, 최초 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 이내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격리실에서 입원 치료한 확진환자 ※ 격리실에 입원하지 아니하고 일반병실에 입원한 경우 미지원 ▶확진환자: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지침(지자체용)(제13-3판)」 사례 정의에 따름 ○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확인된 사람 ○ 코로나19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신속항원검사(전문가용) 또는 응급용 선별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어 의사가 진단한 사람(한시 시행, '22.3.14~별도 안내 시)	○ 위기단계 조정 및 방역조치 변경에 따른 지원대상 변경 ○ 「코로나19 대응 지침(제13-3판)」 개정에 따른 확진환자 사례 정의 반영

<table>
<tr><th>쪽</th><th>현 행(제9판)</th><th>개 정(제9-1판)</th><th>개 정 사 유</th></tr>
<tr><td></td><td>- '22.7.11.부터 코로나19 재택치료 확진환자에 대한 재택치료비(외래진료비용 및 원외처방전 관련 비용 포함)는 지원 중단▶하고, “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치료비”에 한해 지원</td><td>- '22.7.11.부터 코로나19 재택치료 확진환자에 대한 재택치료비(외래진료비용 및 원외처방전 관련 비용 포함)는 지원 중단▶하고, 입원치료비와 “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치료비”는 지원 계속</td><td>○ 재택치료비(외래진료비용 등)는 미지원, 입원치료비는 지원함을 명확하게 명시</td></tr>
<tr><td></td><td>○ (예외대상) ①국제관례, 상호주의 원칙 적용('20.8.24.~), ②귀책사유('20.8.17.~)가 있는 해외유입 확진 외국인, ③전원 등 격리장소 변경 명령을 거부한 자▶

▶ 치료비 지원 제외 대상자
-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 국민에게 치료비를 징구한 국가(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국가 포함)의 국민
- 방역조치 위반자(격리명령, 집합 제한·금지 명령 등), PCR 검사확인서 허위 제출자 등
- 병원 내 전실, 병원 간 전원, 생활치료센터 입소 등 격리장소 변경 명령을 거부한 자

- 입원·격리통지서를 재발급(격리장소 변경)받은 환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입원·격리통지서 재발급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및 필수 비급여는 미지원▶

▶ 근거: 「감염병예방법」 제41조제4항

- 국제관례 또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해외유입 감염 외국인의 경우 코로나19 치료비는 일부 지원 또는 미지원될 수 있음
<table><tr><th>대상 국가▶</th><th>지원범위</th><th>비고</th></tr><tr><td>재외국민 지원 국가</td><td>치료비 전액 지원
*비급여는 본인부담</td><td>전액 국비 지원</td></tr><tr><td>재외국민 미지원 국가
(정보 미확인 국가 포함)</td><td>미지원</td><td>전액 본인 부담</td></tr><tr><td>재외국민 조건부 지원 국가</td><td>격리실 입원료 지원
(식비, 치료비 등 미지원)</td><td>격리실 입원료 국비 지원
(식비, 치료비 등은 본인 부담)</td></tr></table>
▶ “대상 국가” 관련 상세내용
○ (관련 근거) 「감염병예방법」 제69조의2(외국인의 비용 부담)
○ (조회 방법) 대상 국가는 외교부를 통해 공관에 사전 고지되고, 매달 마지막 주에 질병관리청 누리집에 게시하여 익월 1일부터 적용됨
* “질병관리청 누리집(www.kdca.go.kr) 〉 알림·자료 〉 법령·지침·서식 〉 지침”에서 확인 가능</td><td>○ (예외대상) 「감염병예방법」 제69조의2(외국인의 비용 부담)에 따라 국제관례 또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해외유입 감염 외국인의 경우 코로나19 치료비(본인부담금)는 확진환자의 국적에 따라 일부 지원 또는 미지원될 수 있음('20.8.24.~)

▶ 치료비 지원 제외 대상자 〈삭제〉

- 〈삭제〉

- 〈삭제〉
<table><tr><th>지원 분류</th><th>지원범위</th><th>대상 국가▶ 분류 기준</th><th>비고</th></tr><tr><td>전액지원 국가</td><td>치료비(본인부담금)
전액 지원</td><td>재외국민 전액 지원
국가</td><td>-</td></tr><tr><td>미지원 국가</td><td>치료비(본인부담금)
미지원
(전액 본인 부담)</td><td>재외국민 미지원 국가</td><td>상호주의 정보
미확인된 국가는
미지원 국가로 분류</td></tr><tr><td>일부 지원 국가</td><td>격리실 병실료
(본인부담금)만 지원
(식비, 치료비 등 미지원)</td><td>재외국민 일부 지원
국가</td><td>격리실
입원료(병실료) 지원,
그 외 본인 부담</td></tr></table>
▶ “대상 국가” 조회방법
○ 대상 국가는 외교부를 통해 공관에 사전 고지되고, 매달 마지막 주에 질병관리청 누리집*에 게시하여 익월 1일부터 적용됨
* “질병관리청 누리집(www.kdca.go.kr) 〉 알림·자료 〉 법령·지침·서식 〉 지침”에서 확인 가능</td><td>○ 격리권고로 전환함에 따라 격리명령 관련 내용 예외대상에서 삭제

- ‘방역조치 위반자’와 ‘PCR 검사 확인서 허위제출자’ 관련 내용 삭제

- 입원 · 격리통지서 재발급(격리장소 변경) 거부자 관련 내용 삭제

○ 상호주의 관련 내용 명확화</td></tr>
</table>

쪽	현 행(제9판)	개 정(제9-1판)	개 정 사 유
3	**4. 지원기간·범위·방식 등** ○ (지원 기간) 감염병의 타인 전파를 방지하기 위하여 입원·격리통지서를 받아 입원·격리 치료를 시작한 날부터 해제한 날까지 지원	**4. 지원기간·범위·방식 등** ○ (지원 기간)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최초 검체채취일부터 최대 20일까지 지원하고, 중증면역저하자▶의 경우 격리실 입원 치료한 날까지(최초 검체채취일로부터 20일 초과 가능) 지원 ▶ 중증면역저하자의 경우,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격리 치료 기간 결정 가능 - 급성 또는 만성 백혈병 및 림프종에 의한 면역저하 상태 - HIV/AIDS에 의한 중증 면역저하 상태 - 최근 6개월 내 장기이식 관련 면역억제치료 받은 자 - 최근 3개월 내 스테로이드제를 이용한 면역억제치료 받은 자 - 투석이 필요한 환자 - 그 외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면역저하자로 판단되는 자 등 ※ (참고문헌) 영국 보건부 「Guidance for stepdown of infection control precautions and discharging COVID-19 patients('20.5.20)」의 '7. Severe immunosuppression definitions'	ㅇ 방역조치 변경(격리권고)에 따른 지원기간 변경 - 변경된 지원 범위 명시 - 중증면역저하자의 예시 명시
3	- (인정 치료비)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치료비▶의 경우 지원 ▶ "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치료비" 주요 내용 (상세사항은 부록1 참조) ○ 재택치료 집중관리군 모니터링(의료기관주도형 재택치료 환자관리료) 지원 - '22.7.31. 검체 채취자까지 모니터링 비용 지원 ○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요양기관에 내원하여 혈액투석 시 발생하는 비용 지원 - 혈액투석 격리실 입원료, 인공신장실 내 격리관리료, 혈액투석 수가(OH011) 등 ○ 먹는 치료제(팍스로비드 등) 및 주사제(렘데시비르)의 약값 지원 - 재택치료자의 경우 그 외 조제료 등 부대비용은 미지원	- (인정 치료비) 〈좌동〉 ▶ "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치료비" 주요 내용 (상세사항은 부록1 참조) ○ 〈삭제〉 ○ 〈좌동〉 ○ 〈좌동〉	ㅇ 재택치료 집중관리군 모니터링 지원 중단('22.8월~)에 따른 삭제
3	○ (지원 방식) 감염병의 긴급성을 고려하여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사후 정산 실시▶ ▶ 의료기관이 입원·격리치료비 지원 대상인 환자에게 본인부담을 면제하지 않고 납부받은 경우 환자(또는 보호자)가 직접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보건소에 청구 가능	○ (지원 방식) 감염병의 긴급성을 고려하여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사후 정산 실시▶ 〈삭제〉	ㅇ 지원 방식 관련 내용이 아닌 청구 관련 내용으로 삭제 - 관련 내용 '4. 청구 및 비용 지급 절차'에 추가

<table>
<tr><th>쪽</th><th>현 행(제9판)</th><th>개 정(제9-1판)</th><th>개 정 사 유</th></tr>
<tr><td colspan="4">II. 입원·격리 치료비 지원 세부 절차</td></tr>
<tr><td></td><td>
<table>
<tr><th></th><th>세부사항</th><th>주관</th></tr>
<tr><td>의료기관 입원</td><td>○ (보건소) 입원·격리통지서 발급(외국인의 경우 예외 대상 여부 확인) 시에 보건소에서 의료기관 및 생활치료센터에 치료비 지원 예외 대상 여부 안내
○ (환자)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*의 안내에 따라 지정 의료기관 등 입원·격리
* (실거주지 관할 보건소) 격리 통보 및 격리자 관리 담당 보건소</td><td>보건소/환자</td></tr>
<tr><td colspan="3">⬇</td></tr>
<tr><td>의료기관 격리치료 및 퇴원</td><td>○ (의료기관) 입원·격리 치료 후 퇴원 시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통보 및 입원·격리 치료비 지급 예외 대상 여부 확인
* 실거주지 보건소 확인 불가 시 주소지 관할 보건소
○ (보건소) 격리해제 정보 등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입력
* 시설(생활치료센터) 치료 시 입원·격리통지서 재발급(격리장소 변경)</td><td>의료기관 /보건소</td></tr>
<tr><td colspan="3">⬇</td></tr>
<tr><td>치료비 청구</td><td>○ (의료기관)
- 공단부담금은 심평원에 청구
- 본인부담금 및 필수비급여는 관할 보건소*에 청구
* 내국인은 실거주지 보건소, 외국인은 의료기관 보건소
○ (환자) 환자 또는 보호자가 치료비를 의료기관에 납부한 경우 직접 주소지 보건소 지원 신청
* 'III. 치료비 지원 청구 구비서류' 등 참고</td><td>의료기관 /환자 (또는 보호자)</td></tr>
<tr><td colspan="3">⬇</td></tr>
<tr><td>치료비 지급</td><td>○ (공단부담금) 심평원에서 심사하여, 건보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지급
○ (본인부담금 및 필수비급여)
- 내국인의 경우 보건소에서 심사하여 의료기관에 지급
- 외국인의 경우 질병청에서 심사하여 의료기관에 지급</td><td>건보공단, 보건소, 질병관리청</td></tr>
</table>
</td><td>〈삭제〉</td><td>○ 격리 통보 및 병상 배정 등에 관련 내용으로 삭제</td></tr>
<tr><td>5</td><td>1. 감염병 신고 및 입원·격리 명령
▶ 확진환자 신고, 입원격리 명령에 관한 상세사항은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 지침」 참조</td><td>1. 감염병 신고
▶ 확진환자 신고에 관한 상세사항은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 지침」 참조</td><td>○ 격리 명령 관련 내용 삭제</td></tr>
</table>

쪽	현 행(제9판)	개 정(제9-1판)	개 정 사 유
5	2. 사전통지 〈이하 생략〉	〈삭제〉	ㅇ 방역 조치 전환(격리권고)에 따른 격리 통보 관련 절차 삭제
5	3. 격리해제·퇴원·퇴소 시 유의사항 〈이하 생략〉	〈삭제〉	ㅇ 방역 조치 전환(격리권고)에 따른 격리 관련 절차 삭제
6	4. 청구 및 비용지급 절차 ○ (청구 및 비용지급) 의료기관 등(생활치료센터 포함)은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치료비 중 요양급여비용(공단부담금)은 심평원으로 청구, 본인부담금은 심평원 또는 보건소로 청구, 필수비급여는 보건소로 청구▶ ▶입원격리 치료비는 보건소로 청구, 보건소에서 지급 ▶집중관리군 및 요양시설 외래진료 등 치료비(요양급여비용)는 심평원으로 청구 ▶지자체-건강보험공단 간 '재택치료 본인부담금 지급업무' 위탁 계약('22.1.27) 후 '22.1.1. 진료분부터는 의료기관·약국 등 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,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기관·약국 등에 선 지급 후 시·도와 사후정산 ▶실거주지(격리통지 및 격리자 관리) 관할 보건소 확인 불가 시 ⇒ 환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에 청구 - 질병관리청 및 보건소는 청구된 서류 심사 완료 후 1개월 이내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한 해당 기관에 비용을 지급하여야 함	2. 청구 및 비용지급 절차 ○ (청구) 의료기관은 코로나19 관련 입원 치료비 중 환자부담금을 환자에게 받지 아니하고 환자의 주민등록상 관할 보건소로 청구 ▶치료비 청구 시 유의사항 ㅇ (중증면역저하자) 중증면역저하자 치료비 청구 시(검체채취일로부터 20일 초과), △진단명, △검체채취일, △격리실 입원기간, △위중증 또는 중증면역저하자에 해당하여 격리실 입원기간을 연장했음을 알 수 있는 내용 명시한 의사소견서 등 제출 필요 ㅇ (응급실 비용 신청 시) 응급실 비용 신청 시 입원본인부담률이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 ㅇ (외국인 치료비) 외국인 치료비의 경우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로 청구 가능 ㅇ (환자가 납부한 경우) 입원·격리치료비 지원 대상인 환자가 본인부담금을 의료기관에 납부한 경우 환자(또는 보호자)가 직접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보건소에 청구 ○ (비용지급) 내국인 치료비는 지자체(보건소 포함)에서 심사하여 지급하고, 외국인 치료비는 질병관리청에서 심사하여 지급 *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, 급여항목 중 전액본인부담금, 필수비급여항목 - 질병관리청 및 지자체(보건소 등)는 청구된 서류 심사 완료 후 1개월 이내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한 해당 기관에 비용을 지급하여야 함	ㅇ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청구 및 비용 지급 절차 명확화 - 치료비 청구 시 유의사항 명시

<table>
<tr><th>쪽</th><th>현 행(제9판)</th><th>개 정(제9-1판)</th><th>개 정 사 유</th></tr>
<tr><td colspan="4">Ⅲ. 치료비 신청 구비서류 안내</td></tr>
<tr><td>8</td><td>
1. (의원·병원) 입원·격리치료비 지원 신청 시 제출서류 안내
<table>
<tr><th colspan="2">제출서류</th></tr>
<tr><td>비용 신청서</td><td>○ (의원·병원) 입원·격리 및 외래 비용 신청서 1부[서식1]</td></tr>
<tr><td rowspan="3">공통서류</td><td>○ 의료기관이 발행한 영수증 및 진료비 상세 내역 각 1부
*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별지 제6호~제11호 서식 및 「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」 서식1의 서식으로 제출
* 간이 영수(수기용)는 구비서류로 인정하지 않음</td></tr>
<tr><td>○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1부(진단명, 격리시작일, 확진검사일, 격리해제일 명시)
* 진단일, 확진검사일 등이 기재된 '법정감염병 신고서'로 갈음 가능
* 입원·격리 기간이 검체채취일로부터 20일을 초과한 경우 격리해제 여부 및 치료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소견서 또는 진료기록(경과기록) 또는 간호기록 등 추가 제출</td></tr>
<tr><td>○ 병원체 검출 결과가 기재된 검사결과서 각 1부
* 확진환자의 최초 양성결과지는 진단일, 확진검사 결과 등이 기재된 '법정감염병 신고서'로 갈음할 수 있음
* 민간검사결과서, 보건환경연구원 병원체 검사결과서 등
* 입원·격리 시작 시 최초 검사결과서부터 격리해제 시 마지막 검사결과서까지 모두 제출(확진환자의 경우 최초 양성 결과지* 포함)</td></tr>
<tr><td rowspan="3">입원·격리대상자
(또는 보호자)
신청 시
제출서류</td><td>○ 통장(계좌) 사본 1부</td></tr>
<tr><td>○ 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 가능 서류 1부</td></tr>
<tr><td>○ (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) 지원 대상자와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의료기관에서
신청 시
제출서류</td><td>○ 사업자등록증 1부</td></tr>
<tr><td>○ 사업자 통장(계좌) 사본 1부</td></tr>
</table>
</td><td>
1. (의원·병원) 입원·격리치료비 지원 신청 시 제출서류 안내
<table>
<tr><th colspan="2">제출서류</th></tr>
<tr><td>비용 신청서</td><td>○ 〈좌동〉</td></tr>
<tr><td rowspan="3">공통서류</td><td>○ 의료기관이 발행한 영수증 및 진료비 상세 내역 각 1부 〈좌동〉</td></tr>
<tr><td>○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1부(진단명, 확진검체채취일, 격리실 입원기간 명시)
* 〈좌동〉
* 다만, 중증면역저하자 치료비 청구 시(검체채취일로부터 20일을 초과한 경우) △진단명, △확진 검체채취일, △격리실 입원기간, △중증면역저하자임을 알 수 있는 의사소견서 등 제출 필요</td></tr>
<tr><td>○ 병원체 검출 결과가 기재된 검사결과서 각 1부 〈좌동〉</td></tr>
<tr><td rowspan="3">입원·격리대상자
(또는 보호자)
신청 시
제출서류</td><td>○ 〈좌동〉</td></tr>
<tr><td>○ 〈좌동〉</td></tr>
<tr><td>○ 〈좌동〉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의료기관에서
신청 시
제출서류</td><td>○ 〈좌동〉</td></tr>
<tr><td>○ 〈좌동〉</td></tr>
</table>
</td><td>
○ 방역 조치 전환(격리권고)에 따른 청구서류 수정
- 중증면역저하자 치료비 청구 시 확인이 필요한 내용
</td></tr>
</table>

<table>
<tr><th>쪽</th><th>현 행(제9판)</th><th>개 정(제9-1판)</th><th>개 정 사 유</th></tr>
<tr><td colspan="4">서식</td></tr>
<tr><td>9</td><td>
서식 1 입원 · 격리 치료비 비용 신청서 서식
<table>
<tr><th colspan="2">제출서류</th></tr>
<tr><td>비용 신청서</td><td>○ (의원·병원) 입원·격리 및 외래 비용 신청서 1부[서식1]</td></tr>
<tr><td rowspan="3">공통서류</td><td>○ 의료기관이 발행한 영수증 및 진료비 상세 내역 각 1부
*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별지 제6호~제11호 서식 및 「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」 서식1의 서식으로 제출
* 간이 영수(수기용)는 구비서류로 인정하지 않음</td></tr>
<tr><td>○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1부(진단명, 격리시작일, 확진검사일, 격리해제일 명시)
* 진단일, 확진검사일 등이 기재된 '법정감염병 신고서'로 갈음 가능
* 입원·격리 기간이 검체채취일로부터 20일을 초과한 경우 격리해제 여부 및 치료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소견서 또는 진료기록(경과기록) 또는 간호기록 등 추가 제출</td></tr>
<tr><td>○ 병원체 검출 결과가 기재된 검사결과서 각 1부
* 확진환자의 최초 양성결과지는 진단일, 확진검사 결과 등이 기재된 '법정감염병 신고서'로 갈음할 수 있음
* 민간검사결과서, 보건환경연구원 병원체 검사결과서 등
* 입원·격리 시작 시 최초 검사결과서부터 격리해제 시 마지막 검사결과서까지 모두 제출(확진환자의 경우 최초 양성 결과지* 포함)</td></tr>
</table>
</td><td>
서식 1 입원 · 격리 치료비 비용 신청서 서식
<table>
<tr><th colspan="2">제출서류</th></tr>
<tr><td>비용 신청서</td><td>○ 〈좌동〉</td></tr>
<tr><td rowspan="3">공통서류</td><td>○ 의료기관이 발행한 영수증 및 진료비 상세 내역 각 1부 〈좌동〉</td></tr>
<tr><td>○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1부(진단명, 확진검체채취일, 격리실 입원기간 명시)
* 〈좌동〉
* 다만, 입원·격리 기간이 검체채취일로부터 20일을 초과한 경우(중증면역저하자) △진단명, △확진 검체채취일, △격리실 입원기간, △중증면역저하자임을 알 수 있는 의사소견서 등 제출 필요</td></tr>
<tr><td>○ 병원체 검출 결과가 기재된 검사결과서 각 1부 〈좌동〉</td></tr>
</table>
</td><td></td></tr>
<tr><td>12</td><td>서식 4 코로나19 입원격리치료비 지원 및 본인부담 사전고지서
〈이하 생략〉</td><td>〈삭제〉</td><td>○ 방역 조치 전환에 따라 격리 명령 관련 내용 삭제</td></tr>
<tr><td>13</td><td>서식 5 입원·격리통지서 재발급 안내문(사전고지서)
〈이하 생략〉</td><td>〈삭제〉</td><td>○ 방역 조치 전환에 따라 격리 통지 관련 내용 삭제</td></tr>
<tr><td>14</td><td>서식 6 코로나19 입원·격리통지서 재발급 거부 환자 보고서
〈이하 생략〉</td><td>〈삭제〉</td><td>○ 방역 조치 전환에 따라 격리 통지 관련 내용 삭제</td></tr>
<tr><td>15</td><td>서식 7 입원·격리통지서 재발급 거부 환자관리 대장
〈이하 생략〉</td><td>〈삭제〉</td><td>○ 방역 조치 전환에 따라 격리 통지 관련 내용 삭제</td></tr>
</table>

<table>
<tr><th>쪽</th><th>현 행(제9판)</th><th>개 정(제9-1판)</th><th>개 정 사 유</th></tr>
<tr><td></td><td>
<table>
<tr><th>연번</th><th>지원 내용</th><th>주요 내용</th><th>적용 기간</th></tr>
<tr><td>1</td><td>코로나19 진료 관련 감염예방관리료</td><td>• 상급종합병원, 종합병원, 병원, 의원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를 격리입원 진료하는 경우</td><td>'20.1.4.~별도 안내 시</td></tr>
<tr><td>2</td><td>노인요양시설 전담반 방문료</td><td>• 노인요양시설 내 거주하는 코로나19 확진환자를 대상으로 처방, 처치 등 방문진료 실시하는 경우 산정
* 코로나19 확진환자의 격리권고일 내에서만 치료비 지원</td><td>'22.4.5.~8.31.</td></tr>
<tr><td>3</td><td>감염병 전담 정신병원 감염예방관리료</td><td>• 감염병전담정신병원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에 대해 입원 1일당 1회 산정</td><td>'21.12.13.~별도 안내 시</td></tr>
<tr><td>4</td><td>코로나19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</td><td>• 감염병전담요양병원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에 대해 입원 1일당 1회 산정</td><td>'21.12.13.~별도 안내 시</td></tr>
<tr><td>5</td><td>의료기관 주도형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(집중관리군 모니터링 관련)</td><td>• 지자체가 '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'으로 지정한 요양기관에서 재택치료 환자에게 24시간 건강 모니터링 및 비대면 진료 등 환자 관리 시행 시 산정(~7.31.검체 채취자까지)
* '집중관리군 모니터링' 의료기관 주도형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지원 계속</td><td>'21.9.25.~별도 안내 시</td></tr>
<tr><td>6</td><td>전용생활치료센터 및 거점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</td><td>• 코로나19 확진자가 격리기간 중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또는 거점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된 경우</td><td>'21.10.5.~별도 안내 시</td></tr>
<tr><td>7</td><td>혈액투석 격리실 입원료</td><td>• 혈액투석 환자 중 확진자를 대상으로 격리실에서 혈액투석 시 격리실 입원료 산정
* 재택치료 중인 코로나19 확진환자도 지원</td><td>'21.12.13.~별도 안내 시</td></tr>
<tr><td>8</td><td>혈액투석 인공신장실 내 격리관리료</td><td>• 혈액투석 환자 중 확진자를 대상으로 인공신장실 내 코호트 격리투석 시 인공신장실 내 격리관리료 산정
* 재택치료 중인 코로나19 확진환자도 지원</td><td>'21.12.13.~별도 안내 시</td></tr>
<tr><td>9</td><td>혈액투석 수가 (수가코드: OH011)</td><td>• 확진자에게 혈액투석을 시행하는 경우 혈액투석 행위 수가(수가코드: OH011) 200% 인상
* 재택치료 중인 코로나19 확진환자도 지원</td><td>'20.12.24.~별도 안내 시</td></tr>
<tr><td>10</td><td>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및 주사제</td><td>• 코로나19 먹는 치료제(팍스로비드 등)와 주사제(렘데시비르)의 약값은 지원
* 그 외 조제료 등 부대비용은 본인부담</td><td>별도 안내 시까지</td></tr>
</table>
</td><td>
<table>
<tr><th>연번</th><th>지원 내용</th><th>주요 내용</th><th>적용 기간</th></tr>
<tr><td>1</td><td>코로나19 진료 관련 감염예방관리료</td><td>〈좌동〉</td><td>〈좌동〉</td></tr>
<tr><td>2</td><td>노인요양시설/정신(요양·재활)시설/장애인거주시설 전담반 방문료</td><td>• 노인요양시설 내 거주하는 코로나19 확진환자를 대상으로 처방, 처치 등 방문진료 실시하는 경우 산정
* 코로나19 확진환자의 격리기간권고일 내에서만 치료비 지원</td><td>'22.4.5.~별도 안내 시</td></tr>
<tr><td>3</td><td>〈삭제〉</td><td>〈삭제〉</td><td>〈삭제〉</td></tr>
<tr><td>4</td><td>〈삭제〉</td><td>〈삭제〉</td><td>〈삭제〉</td></tr>
<tr><td>5</td><td>〈삭제〉</td><td>〈삭제〉</td><td>〈삭제〉</td></tr>
<tr><td>6</td><td>〈삭제〉</td><td>〈삭제〉</td><td>〈삭제〉</td></tr>
<tr><td>7</td><td>혈액투석 격리실 입원료</td><td>• 혈액투석 환자 중 확진자를 대상으로 격리실에서 혈액투석 시 격리실 입원료 산정
* 재택치료 중인 코로나19 확진환자도 지원</td><td>'21.12.13.~별도 안내 시</td></tr>
<tr><td>8</td><td>혈액투석 인공신장실 내 격리관리료</td><td>• 혈액투석 환자 중 확진자를 대상으로 인공신장실 내 코호트 격리투석 시 인공신장실 내 격리관리료 산정
* 재택치료 중인 코로나19 확진환자도 지원</td><td>'21.12.13.~별도 안내 시</td></tr>
<tr><td>9</td><td>혈액투석 수가 (수가코드: OH011)</td><td>• 확진자에게 혈액투석을 시행하는 경우 혈액투석 행위 수가(수가코드: OH011) 200% 인상
* 재택치료 중인 코로나19 확진환자도 지원</td><td>'20.12.24.~별도 안내 시</td></tr>
<tr><td>10</td><td>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및 주사제</td><td>• 코로나19 먹는 치료제(팍스로비드 등)와 주사제(렘데시비르)의 약값은 지원
* 그 외 조제료 등 부대비용은 본인부담</td><td>별도 안내 시까지</td></tr>
</table>
</td><td>○ 폐지 또는 미지원 수가 삭제</td></tr>
<tr><td></td><td>
부록 2 업무 처리별 세부 흐름도
○ 해외유입 외국인 입원·격리 치료비용 자부담 절차
〈이하 생략〉
○ 입원·격리통지서 재발급 절차
〈이하 생략〉
</td><td>
부록 2 업무 처리별 세부 흐름도
○ 해외유입 외국인 입원·격리 치료비용 자부담 절차 〈삭제〉
○ 입원·격리통지서 재발급 절차 〈삭제〉
</td><td>○ 격리 통보, 격리 관리, PCR 음성확인서 제출 관련 내용 삭제
○ 입원 · 격리통지서 발급 절차 삭제</td></tr>
</table>

쪽	현 행(제9판)	개 정(제9-1판)	개 정 사 유
	코로나19 입원·격리 치료비 Q&A		
16	Q1. 코로나19 입원·격리 치료비 지원 대상자는? ○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지침」에 따라 신고되어, 보건소에서 입원·격리통지서를 받아 격리기간 동안 **입원 또는 격리시설에 입소한 확진환자** * 국내감염된 무자격체류 외국인 포함, 미가입자 포함 *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 지침」에 따라 **입원 격리 여부 변동 가능** ○ '22.7.11.부터 코로나19 확진환자에 대한 재택치료비(외래진료비용 및 원외처방전 관련 비용 포함)는 지원 중단 * 다만, 검체 채취일이 7월 10일까지인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재택치료비는 격리해제일까지 지원 계속	Q1. 코로나19 입원·격리 치료비 지원 대상자는? ○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 지침」에 따라 신고되어, 최초 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 이내 의료기관 내원하여 **격리실에서 입원 치료한 확진환자**▶ ▶ 확진환자: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지침(지자체용)(제13-3판)」 사례 정의에 따름 ○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확인된 사람 ○ 코로나19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신속항원검사(전문가용) 또는 응급용 선별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어 의사가 진단한 사람(한시 시행, '22.3.14~별도 안내 시) ○ 격리실에 입원하지 아니하고 **일반병실에 입원한 경우 미지원**	○ 방역 조치 전환(격리권고)에 따라 지원대상 변경 반영
16	Q2. 외국인 코로나19 입원·격리 치료비 지원 대상자 분류는? ○ 외국인 코로나19 입원·격리 치료비 지원은 국내감염의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지원(무자격체류 외국인 포함), 해외감염의 경우 국가별 상호주의 적용 - 감염병신고웹에 추정감염지역이 국내로 신고된 외국인의 경우, 내국인과 동일하게 지원, 감염경로가 해외인 경우 입국일 기준 상호주의*에 따라 차등 지원 * 상호주의 원칙 적용 시행('20.8.24부터)에 따라, 입국일 기준 해당 월의 "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국가별 치료비 지원 국가"에 따른 차등 지원 - PCR 음성확인서 위변조, 방역조치위반(격리명령, 집합제한 금지명령 등) 등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미지원	Q2. 외국인 코로나19 입원·격리 치료비 지원 대상자 분류는? ○ 국내감염의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지원(무자격체류 외국인 포함), **해외유입 감염의 경우 국가별 상호주의 적용**하여 ▲전액지원, ▲미지원, ▲일부 지원 국가로 분류 지원 분류 / 지원범위 / 비고 전액지원 국가 / 치료비(본인부담금) 전액 지원 / - 미지원 국가 / 치료비(본인부담금) 미지원 (전액 본인 부담) / 상호주의 정보 미확인된 국가는 미지원 국가로 분류 일부 지원 국가 / 격리실 병실료 (본인부담금)만 지원 (식비, 치료비 등 미지원) / 격리실 병실료 지원, 그 외 본인 부담 ○ **(조회 방법)** 대상 국가는 외교부를 통해 공관에 사전 고지되고, 매달 마지막 주에 질병관리청 누리집*에 게시하여 익월 1일부터 적용됨(입국일 기준) * "질병관리청 누리집(www.kdca.go.kr) 〉 알림·자료 〉 법령·지침·서식 〉 지침"에서 확인 가능	○ 상호주의 관련 내용 명확화
17	Q4. 코로나19 격리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(7.11.~)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? *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 방안(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('22.6.24.)) ○ 보건소에서 입원·격리통지서를 받아 격리기간 동안 입원 또는 격리시설에 입소한 코로나19 확진환자 - 요양시설* 내에서 격리된 확진자가 코로나19 관련으로 외래진료비(약제비 포함) 지원 *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노인요양시설, 노인요양공동생활시설, 「정신건강복지법」 제22조 및 제26조에 따라 설치된 정신요양시설, 정신재활시설 중 입소시설 ○ '22.7.11.로 격리 통지받은 확진환자부터 재택치료비는 지원 중단 - 다만, 검체 채취일이 7월 10일까지인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재택치료비는 격리해제일까지 지원 계속 ○ 응급실에서 코로나19 관련 치료를 받고 입원 본인부담률을 적용받은 확진환자 -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확진되어 치료를 받고 입원 본인부담률을 적용받은 확진환자의 경우 지원 대상 ○ 집중관리군 모니터링(의료기관 주도형 재택치료 환자관리료) 비용 지원 - 재택치료 환자관리료는 지원하고 그 외 약제비 등 본인부담금은 미지원	**〈삭제〉**	○ 재택치료 종료에 따른 관련 내용 삭제

쪽	현 행(제9판)	개 정(제9-1판)	개 정 사 유
18	Q5. 입원·격리 치료비 지원범위는? ○ 코로나19와 관련한 입원치료, 입원 본인부담률을 적용받는 응급실 치료, 조사, 진찰 등에 드는 경비를 지원, 코로나19와 무관한 치료비와 진단검사비는 미지원 ○ 격리기간 동안의 치료에 대한 비용지원이므로, 입원 기간 중 처방된 항목(퇴원약, 퇴원환자 조제료 등)이라도, 격리기간 종료 후에 대한 치료는 지원 대상이 아님 ○ 담당의(소견) 및 시·도 환자관리반에서 동일 의료기관 내 병실 전실, 타 의료기관 전원 및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결정한 경우 '입원·격리통지서를 재발급(입원/격리장소 변경 통보)할 수 있으며 환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입원·격리 통지서 재발급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한 비용은 환자가 부담	Q4. 입원·격리 치료비 지원범위는? ○ 코로나19와 관련한 치료, 조사, 진찰 등에 드는 치료비를 보건복지부 요양급여기준에 의한 **본인부담금 범위 내에서 지원**하고, **코로나19와 무관한 치료비와 비급여* 항목은 미지원** * (필수비급여) 서식3 "코로나19 관련 필수 부분 비급여 진료비 소명 서식"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○ **(응급실)** 응급실에서 코로나19 관련 치료를 받고 **입원 본인부담률을 적용받은 확진환자**에 대해서만 치료비(입원본인부담금)를 지원하고, 외래본인부담률인 경우 미지원 ○ **(퇴원약)** 격리실 입원기간 동안 치료에 대한 비용지원이므로, 입원 기간 중 처방된 퇴원약 항목*은 입원 기간 종료 후에 대한 치료로 지원 대상이 아님 * 퇴원약제비, 퇴원약 조제료, 외래의약품 관리료 등 - 퇴원 시에 격리권고 기간(5일)*이 남은 경우 그 기간까지만 지원 가능하고, 초과한 경우 미지원 * 입원환자의 경우 격리권고일이 7일이지만, 퇴원하여 격리권고일은 검체채취일로부터 5일	○ 방역 조치 전환(격리권고)에 따라 지원범위 명확화
18	Q6. 코로나19 입원·격리기간 동안 기저질환 및 합병증의 치료비 지원 여부는? ○ 기저질환 등 코로나19와 관련이 없는 질환에 관하여는 자부담 대상 - 입원·격리 치료기간 동안 코로나19와 무관한 상병을 동시에 진료한 경우, 진료내역을 분리하여 청구	Q5. 코로나19 입원동안 기저질환 및 합병증의 치료비 지원 여부는? ○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다른 질환으로 치료 목적으로 격리실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경우, 격리실 병실료와 코로나19 진단검사비의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지원하고, 코로나19와 관련이 없는 치료 내역에 관하여는 미지원 - 입원·격리 치료기간 동안 코로나19와 무관한 상병을 동시에 진료한 경우, 진료내역을 분리하여 청구(코로나19 관련 치료비는 지원)	○ 방역 조치 전환(격리권고)에 따라 지원범위 명확화
18	Q8. '집중관리군 모니터링' 지원 여부는? ○ 의료기관주도형 재택치료 환자관리료의 본인부담금 지원 유지('22.7.31.까지) ○ 집중관리군 모니터링비를 제외한 약제비의 본인부담금은 미지원	**〈삭제〉**	○ 재택치료 종료에 따른 관련 내용 삭제
18	Q9. '내국인 건강보험 가입* 코로나19 확진환자'의 치료비 중 공단부담금뿐만 아니라 본인부담금까지 공단에서 일괄 지급 가능한 경우는? * 의료급여 수급권자 포함 ① 요양시설* 입소한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외래진료를 보는 경우 *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노인요양시설, 노인요양공동생활시설, 「정신건강복지법」 제22조 및 제26조에 따라 설치된 정신요양시설, 정신재활시설 중 입소시설 ② 검체 채취일이 7월 10일까지인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재택치료비 ③ 집중관리군 모니터링(의료기관 주도형 재택치료 환자관리료) 비용 ④ 입원환자의 먹는 치료제 원외처방(약국) 시 발생하는 비용	**〈삭제〉**	○ 재택치료 종료에 따른 관련 내용 삭제

<table>
<tr><th>쪽</th><th>현 행(제9판)</th><th>개 정(제9-1판)</th><th>개 정 사 유</th></tr>
<tr><td>18</td><td>Q11. 재택치료자의 먹는 치료제 처방과 주사제 투약 시 발생되는 부대비용(조제료 등) 지원 여부는?
○ 재택치료자의 코로나19 경구치료제(팍스로비드 등)와 주사제(렘데시비르) 약값은 지원하되, 조제료 등 부대비용은 미지원</td><td>〈삭제〉</td><td>○ 재택치료 종료에 따른 관련 내용 삭제</td></tr>
<tr><td>18</td><td>Q12. 코로나19 확진환자가 혈액 투석 치료를 받을 때 지원 여부 및 범위는?
○ 코로나19로 확진된 혈액투석 환자가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격리실 또는 인공신장실 내 코호트 격리 투석실 이용 시, 격리실 입원료, 격리관리료, 혈액투석 수가 중 일부(OH011) 등 지원(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치료비, 부록1 참조)
- 재택치료 중인 혈액투석 환자가 혈액투석을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격리실을 이용한 경우에도 지원</td><td>Q8. 자율격리 중인 코로나19 확진환자가 혈액 투석 치료를 받을 때 지원 여부 및 범위는?
○ 코로나19로 확진되어 자율격리 중인 혈액투석 환자가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격리실 또는 인공신장실 내 코호트 격리 투석실 이용 시, 격리실 입원료, 격리관리료, 혈액투석 수가(OH011) 등 지원하지만, 투석 비용, 투석 약제값은 미지원
※ 부록1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치료비 참조
- 외래환자의 경우 격리 권고 기간(검체채취일로부터 5일)까지 지원</td><td>○ 자율격리 중인 코로나19 확진환자에 대해 격리 권고 기간 동안 투석 치료 지원</td></tr>
<tr><td>19</td><td>Q14. 응급실 지원 여부 및 지원 범위는?
○ 응급실에서 코로나19 관련 치료를 받고 입원 본인부담률을 적용받은 확진환자에 대해서만 치료비(입원본인부담금)를 지원하고, 외래본인부담률인 경우 미지원
-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확진되어 치료를 받고 입원 본인부담률을 적용받은 확진환자의 경우 지원 대상
▶ 응급의료수가 본인부담률 산정 기준(예시)
<table><tr><th>응급의료기관</th><th>입원 본인부담률</th><th>외래 본인부담률</th></tr><tr><td>중앙응급의료센터</td><td rowspan="3">중증응급환자
또는
중증응급의심환자</td><td rowspan="3">중증응급환자가 아닌 환자
또는
중증응급의심환자가 아닌 환자</td></tr><tr><td>권역응급의료센터</td></tr><tr><td>지역응급의료센터</td></tr><tr><td>지역응급의료기관</td><td>6시간 이상 체류</td><td>6시간 미만 체류</td></tr></table>※ 중증응급환자 : 한국형 중증도 분류기준(KTAS) 1, 2등급
중증응급의심환자 : 한국형 중증도 분류기준(KTAS) 3등급</td><td>Q10. 응급실 지원 여부 및 지원 범위는?
○ 응급실에서 코로나19 관련 치료를 받고 입원 본인부담률을 적용받은 확진환자에 대해서만 치료비(입원본인부담금)를 지원하고, 외래본인부담률인 경우 미지원
- 내원 후 응급실에서 확진된 경우, 코로나19 질환 관련한 검사 및 진료 등에 대해서는 지원하고, 응급실에서 신속항원검사(전문가용) 또는 응급선별검사로 확진된 경우 검사비 포함하여 지원
- (청구 유의사항) 의료기관에서 응급실 비용 신청 시 입원본인부담률이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</td><td>○ 응급실 치료비 지원 범위 및 청구 유의사항 명시</td></tr>
<tr><td>19</td><td>Q15.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확진 환자의 경우 입원·격리치료비 지원 여부는?
○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날부터 퇴소하는 날까지 코로나19와 관련된 입원·격리 치료비는 지원, 생활치료센터에서 관할 보건소로 신청
*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(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 참조)</td><td>〈삭제〉</td><td>○ 생활치료센터 에 따른 관련 내용 삭제</td></tr>
<tr><td>19</td><td>Q16. 재택치료 중인 확진환자가 코로나19 외 질환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입원·격리치료비 지원 여부는?
○ 입원·격리통지서를 받은 자가 코로나19 이외의 질환으로 병원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입원하는 날부터 격리가 해제되는 시점까지 격리실 입원료 및 코로나19 진단검사비에 한하여 입원·격리치료비 지원</td><td>Q12. 확진환자가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입원·격리치료비 지원 여부는?
○ 최초 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 이내 의료기관 내원하여 격리실에서 입원 치료한 확진환자의 코로나19 관련 치료비는 지원
○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다른 질환으로 치료 목적으로 격리실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경우 격리실 병실료와 코로나19 진단검사비에 대해서만 지원하고, 코로나19와 관련이 없는 치료 내역에 관하여는 환자 부담
○ 격리실이 아닌 일반병실에 입원하여 치료한 경우 미지원</td><td>○ 치료비 지원 범위 명확화
- 자율격리 중인 확진환자의 치료비 지원 범위 등</td></tr>
</table>

쪽	현 행(제9판)	개 정(제9-1판)	개 정 사 유
19	Q17. 코로나19 이외의 질병 치료 목적으로 의료(요양)기관에 입원해 있던 환자가 의료기관 내 코로나19 접촉자로 분류되어 해당 의료(요양)기관의 격리실로 이동한 경우 지원 여부는? ○ 입원·격리치료 명령이 시작된 날부터 해제되는 날까지 격리실 입원료 및 코로나19 진단검사비에 한하여 입원·격리치료비 지원 - 의료(요양)기관 내 코호트 격리된 접촉자도 지원대상에 포함 *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 지침」에 따라 격리 해제 시점 변동 가능	Q17. 코로나19 이외의 질병 치료 목적으로 의료(요양)기관에 입원해 있던 환자가 의료기관 내 코로나19 접촉자로 분류되어 해당 의료(요양)기관의 격리실로 이동한 경우(코호트 격리) 지원 여부는? ○ 코호트 격리 시작한 날부터 종료한 날까지 격리실(병실료)와 코로나19 진단검사비에 한하여 지원 *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 지침」에 따라 격리 해제 시점 변동 가능	○ 코호트 격리 중인 환자에 대한 지원 범위 명시
19	Q18. 코로나19로 인하여 발생하는 입원·격리 치료비 중 지원 가능한 비급여 범위는? 생략 ○ (제증명료) 지침상 명시적으로 지급 제외토록 되어 있으나, 전원 등 방역당국 필요에 의한 발생된 경우 비급여 지원 - 전원 등 방역당국의 필요에 의해 발생되었음을 전원소견서, 의사소견서 등의 자료로 제출 시 지원 - PACS CD COPY, 검사기록지 사본 〈이하생략〉	Q18. 코로나19로 인하여 발생하는 입원·격리 치료비 중 지원 가능한 비급여 범위는? 생략 ○ (제증명료) 지침상 명시적으로 지급 제외토록 되어 있으나, 전원 등 방역당국 필요에 의한 발생된 경우 비급여 지원 - 전원 등 방역당국의 필요에 의해 발생되었음을 전원소견서, 의사소견서 등의 자료로 제출 시 지원 - 중증면역저하자의 치료비 청구(20일 초과)를 위해 발급하는 경우 지원 - PACS CD COPY, 검사기록지 사본	○ 중증면역저하자의 치료비(20일 초과) 청구 시 징구 서류 제출 시 지원
19	Q19.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에서 코로나19 관련하여 의약품 처방 시 청구가 가능한지? ○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원내 처방(조제)할 수 있으며, 처방된 약제비만 청구(의약품관리료 등 관련 행위는 청구 불가) - 단, 코로나19 경구치료제(팍스로비드 등)를 투약하는 경우 의약품관리료, 입원환자 조제·복약지도료 등 산정 가능	〈삭제〉	○ 재택치료 종료에 따른 관련 내용 삭제
19	Q20. '코로나19 입원·격리치료비 지원 및 본인부담 사전고지서'는 언제, 누구에게 받아야 하는지? ○ '21.12.17부터 '유증상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'이 변경 시행됨에 따라, 입원 환자에 대해 사전에 고지 내용 등에 대해 안내 - 격리치료비 지원 및 전원 조치 거부에 따른 본인부담 사전고지(의료기관→환자) - 환자 입원 시 환자 및 보호자에게 ❶격리치료비 지원 제도(대상, 기간 등) 및 ❷증상 호전 및 격리해제에 따른 전원 조치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, 거부 시 치료비 본인부담 및 과태료 부과함을 안내 * 유증상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변경 안내 및 전원 등 관련 협조 요청(중수본-41172, 2021.12.16.)	〈삭제〉	○ 재택치료 종료에 따른 관련 내용 삭제

쪽	현 행(제9판)	개 정(제9-1판)	개 정 사 유
20	Q21. 외국인 입원·격리 치료비 지급 방법은? ○ 의료기관에서 관할 보건소에 청구하고 질병관리청에서 입원·격리 치료비 지원 * 「감염병예방법」 제67조 및 「2020년도 감염병 관리 사업 지침」 참조 ○ 다만, 상호주의에 원칙에 따라 치료비를 일부지원하거나 미지원 할 수 있고,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외국인에게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지 않음 〈외국인 진료비 지원 절차(의료기관/환자)〉 ① 보건소 신고 및 입원·격리통지서 발급 ② 병원 입원·격리 등 진료 ③ 본인부담금을 환자가 납부시에는 환자(또는 보호자)가, 미납부시에는 의료기관이 관할 보건소에 입원(격리) 비용 신청서 제출 ④ 제출서류 검토 후 **보건소장이 시도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에게 청구** ⑤ 제출서류 검토 후 질병관리청장이 신청자(환자 또는 의료기관 등)에 지급	Q21. 외국인 입원·격리 치료비 지급 방법은? ○ 의료기관에서 관할 보건소에 청구하고 질병관리청에서 직접 지급 * 「감염병예방법」 제67조 및 「2023년도 감염병 관리 사업 지침」 참조 ○ 다만, 상호주의에 원칙에 따라 치료비를 일부지원하거나 미지원 할 수 있고,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외국인에게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지 않음	○ 격리 관리 관련 내용 삭제
21	Q22. 입원·격리 비용 신청서 서식 안내의 제출서류 중 '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에 대해 '법정감염병 신고서'로 갈음되는지? ○ '법정감염병 신고서'로 갈음될 수 있으나, 법정감염병 신고서만으로는 코로나19 관련 세부 내용 파악이 어려워, 발열 등 코로나 19 임상증상, 코호트 격리, 격리시작 및 해제일 등의 기록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(응급기록, 진료기록, 경과기록, 활력 징후기록지 등)	Q22. 입원·격리 비용 신청서 서식 안내의 제출서류 중 '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에 대해 '법정감염병 신고서'로 갈음되는지? ○ '법정감염병 신고서'로 갈음될 수 있으나, 법정감염병 신고서만으로는 코로나19 관련 세부 내용 파악이 어려워, 발열 등 코로나 19 임상증상, 코호트 격리, 격리시작 및 해제일 등의 기록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(응급기록, 진료기록, 경과기록, 활력 징후기록지 등) ○ 다만, 중증면역저하자 치료비 청구 시(검체채취일로부터 20일을 초과한 경우) △진단명, △확진 검체채취일, △격리실 입원기간, △중증면역저하자임을 알 수 있는 의사소견서 등 제출 필요	○ 중증면역저하자 치료비 청구 시 유의사항 명시
21	Q24.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와 확진환자로 신고된 경우 본인부담금 지원은? ○ 재택치료비 지원 중단('22.7.11. 격리통지자부터)에 따라 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으로 나와도 외래진료 시 발생한 진찰료 및 약제비 등은 본인이 부담 - 다만, 양성확인 이후 먹는 치료제(팍스로비드 등) 또는 주사제(렘데시비르) 코로나19 치료제의 약값은 지원하지만 그 외 비용에 대해서는 본인부담 * 단, 코로나19와 관련 없는 치료비는 자부담	〈삭제〉	○ 재택치료비 지원 중단에 따라 관련 내용 삭제
21	Q26. 병실 부족으로 다인실 또는 일반입원실을 1인 격리실로 운영 또는 중환자실 내에서 단독 격리하는 경우 지원은? ○ 병실부족으로 다인실 또는 일반입원실을 1인 격리실로 운영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1인용 격리실 입원료로 인정	〈삭제〉	○ 격리실 운영 기준 변경에 따라 해당 내용 삭제 * 복지부 보험급여과, 심평원 별도 안내 예정